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8
----------	------

발의연월일 : 2025. 8.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김보경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참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공모대회, 캠페인 등의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추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25. 일부개정·시행)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1호 ~ 제6호 (생략)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폐기물관리법」(2025. 3. 25.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제6호 (생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2024. 12. 31. 타법개정, 2025. 1. 1.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에 따라 재정수반이 예상됨(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정의상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원단, 잉크 등)의 단가가 사용제품에 따라 각기 달라 정확한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만일 정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에 지급 금액 및 개수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을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